

성명서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옵니다.

존경하는 전국 원로 대덕 비구 비구니스님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행과 포교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대가회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원들은 최근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른 ‘유언장’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비 불교적인 법령이 강행되고 있는 것을 좌시 할 수 없어 지난 2554(2010)년 3월 29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스님과 총무원장스님 그리고 중앙종회 의장스님께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는 종단에서 올린 그 건의서의 내용중 주요 골자만을 간추려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려는 이 조그마한 목소리가 종단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사부대중에게 바르게 전달되어 종단에서 시행코자 하는 비 불교적인 법령들을 개정하게 하는 천둥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 어디에도 유언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국 비구 비구니 승가에게 유언장을 제출하라는 종령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닙니다.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종령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종단에서는 승려 사후 사유재산의 속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 승려에게 유언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의 강제 요구는 부처님의 율장과 선종의 청규는 물론 국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율장과 청규의 위반이며 인권 침해이다.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그 수단은 납득할 수 없다. 승가는 수준을 갖춘 수행자들의 모임이다. 승려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다. 인권과 승려의 기본권한을 침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2. 승려 사유재산을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라고 확인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전국 승려의 사유재산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승려의 사유재산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재산의 소유와 같이 가람을 수호하고 불법홍포를 위한 엄연한 승려의 소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부처님의 불법을 전승하기 위한 부처님의 제자가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승려는 이 재산으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며 가람을 수호하고 대중을 애호하며 그리고 도제를 양성합니다.

종단은 율장에도 청규에도 없는 법령을 만들어 강행코자 하는데 전국 승가대중은 승려의 사유재산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라고 확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려의 사유재산은 엄연한 현전승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소유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3.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의 령에는 승려의 자유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닙니다. 전국 비구 비구니 승가가 자유의사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후 승려 개인재산의 속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제도는 반드시 유언장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스님들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예방책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기 생애의 뒷 마무리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다. 즉, 수행자의 수행여하에 따라 사유재산의 처리가 분별된다 할 수 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재단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승려 노후복지와 교육재원을 위한 재단인 것인지, 아니면 전국 승려 사유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재단인지 그 실체가 불분명 합니다.

4. 승려분한신고는 유언장과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종령에 권리제한을 두는 것은 재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종단에서 시행코자 하는 승려분한신고는 유언장 제출요구로 인하여 그 명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승적은 국민의 호적과도 같습니다. 구비서류 제출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부로 하여 요구 하는 것은 분말이 전도 되어 마치 승려분한신고 보다 유언장 제출이 더 큰 목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서류 제출 시에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권리 제한)이 그 안전과 성격이 다른 것을 요구 하는 것은 행정상의 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언장은 일생을 마감하는 임종의 엄숙한 순간에 행해지는 의례로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종의 순간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인바, 유언장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진정한 소통과 화합은 전국 비구 비구니 승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화합을 깨트리는 비불교적인 종령은 그 시행을 중지하고 폐기 하여야 합니다.

율장에서의 ‘화합’이란 의미는 결계의 현전승가(교구승가)가 ‘다 함께 계를 설하고(同一說戒), 다 함께 갈마(同一羯磨, 대중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단은 물론 전국의 승가가 부처님의 계율을 존중하고 그리고 결계 현전승가가 대중의 갈마(결의)에 의하여 수행을 할 때 진정한 승가의 화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법령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승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받들어 시행을 한다면 지혜와 덕망을 갖춘 지도자의 행정이라고 존경을 할 것입니다.

6. 전국 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종단에서 요구하는 유언장을 세 번만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것

은 순수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승려 사유재산이 종단 재산이라고 확인하고 유증하는 계약서입니다.

스님들은 너무 순수하여 문제의 핵심인 유언장과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법률관계 서류나 계약서에 함부로 날인을 하면 소송에 연루 되거나 파산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최근 종단에서 ‘스님들의 사후재산 기증의 폭을 넓혀 본사나 재단이나 소속 사찰에 기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어떤 곳에 기증을 선택했다 하여도 그 재산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인정하여 주는데 불과합니다. 즉, 유언장에 날인을 하는 그 순간 스님 소유의 재산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변경되어 일체 스님의 소유인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종래 신도들로부터 사사공양의 시주를 받고 선원으로부터 해제비를 받아 생활 하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 소유재산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라는 차압을 부친 집에서 산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열반하시기 전까지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만일 이러한 제도대로 살아간다면 제자들은 무슨 돈으로 가르치고 돌보아 주며 스승이 열반하신 후에는 무슨 돈으로 장례를 치루며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본인은 무슨 돈으로 남은 생을 살아 갈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법령을 만들고 또한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조계종의 승려라고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7. 유언장 작성요구 전원지는 “승려법 제30조의 2항”입니다. 종회는 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승려법 제30조 2항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에 보면 “①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증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은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명의로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에 종단에 귀속된다”라고 하고 이하 ③④⑤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단은 이 법에 근거하여 “승려 사유재산 종단출연에 관한 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령에 의하여 유언장과 계약서 작성을 동시에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④에는 종단은 승려법 제 30조 2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는 승려 사유재산의 정의에 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종회에서는 반드시 개정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종단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절차와 시행에 부처님의 율장과 선종의 청규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벗어난 법령들은 조계종의 법령이 아닙니다.

종단은 정화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법난과 내분을 겪어 왔었다. 사건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불법에서 벗어나고 장기집권이나 이런 개입에 의한 싸움이였다.

다행히 정법을 수호하려는 호법신장의 대중들이 있어 그나마 종단은 안정되었다. 앞으로 종단의 책임자들은 이판과 사판에 능통한 수행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원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단의 소임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당번의 자리이다. 그리고 종단의 행정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의 관계이다. 정부나 군대와 같이 수직으로 명령 복종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대중을 존경하고 중의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9.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실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가의 발전과 유지존속이 정법구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 종색선사는 ‘승가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불법도 존중하게 되며, 승가가 세상으로부터 가벼이 여김을 받으면 불법도 가볍게 된다.’라고 하였다.

승단에 분쟁이 발생하면 지혜를 모아 그 분쟁을 없애야만 한다. 여기 멸쟁법에는 다수가결법이 아니다. 먼저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교리)인가? 아닌가? 또는 율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법자(如法者)가 많을 때 이 사안을 가결한다.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이 분쟁의 종결로 인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친애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재가대중 여러분!

이번 우리들의 주장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단의 율법과 청규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 ‘승려의 사유재산’ 이라고 하니 스님들이 무슨 재산 싸움을 하는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이라면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재산에 집착을 하는가? 라고 하여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단에는 승가가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계율과 청규(규약)가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사찰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개인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이번 종단의 법령은 개인 소유 재산을 종단의 재산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불교 역사상에 찾아 볼 수 없는 비 불교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승단의 재산과 개인 재산(소유물)은 구분하여 인정 되었으며, 대승불교에 와서도 승가 개인의 소유 재산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소욕지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대가회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회원 일동